
V

연구 요약 및 제언

- ① 연구 요약
- ② 제언 사항



1

연구 요약

- ▶ 본 연구는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학교수영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 최근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학교수영장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과는 차별화된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특히 학교수영장과 함께 설치된 부대시설은 체육시설, 위생시설, 운영관리시설, 편의시설, 설비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운영 현황과 설치 특성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 및 유사시설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 수영장 부대시설에 적용 가능한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가.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 운영 현황 분석

- ▶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수영장은 운영주체, 운영방식, 준공연도, 지역별 분포 측면에서 다양한 운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 서울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학교수영장 운영 현황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개교, 공립기준)	48	35	7	6

- ▶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외부기관 또는 위탁 운영되는 시설 간 시설관리 수준 및 운영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한 학교수영장이더라도 부대시설 구성과 활용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 현장조사 결과, 탈의실·샤워실·화장실 등 기본 위생시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체육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은 학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표 V-2 부속시설(부대시설 포함)

번호	유형	상세 시설
1	운영·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관리실, 안내실, 접수대, 카운터 • 강사실, 강사대기실, 코치실, 회의실 • 관제실, 중앙감시실, 방송실, 기구창고
2	이용자 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락커실

번호	유형	상세 시설
3	이용자 편의시설	• 휴게실, 이용자 휴게공간, 수유실, 세탁실
4	체육시설	• 헬스장, 체력단련실, 웨이트장 • GX룸, 에어로빅실, 요가실, 필라테스실 • 태권도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축구장 • 다목적홀, 소체육관
5	부대서비스시설	• 매점, 식당, 조리실, 판매실, 사우나 • 문화강좌실, 관망대, 전망대
6	기계·설비시설	•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공조실 • 수처리실, 기관실, 자재실,
7	공용시설	• 계단, 복도, 전실, 출입구, 로비, 홀 • 주차장, 승강기, 방풍실
8	안전·의료시설	• 의무실, 응급실, 응급처치실, 안전관리실, 안전요원실

※ 출처: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p.7~9(붙임: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 일부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수영장 운영 목적 외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용허가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사례도 확인됨
-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 학생과 지역주민 간 동선 분리 수준, 이용자 안전관리 체계 등에서 시설별 편차가 존재하여 표준화된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이 확인됨

나. 법령 및 기준 검토를 통한 적용 체계 구성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교육시설 내 설치된 복합시설로서, 단일 법령이 아닌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임
- ▶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체육시설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전기설비 관련 기준」 등 다수 법령에서 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운영 형태 및 이용 목적에 따라 적용 법령상 용도와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법령 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을 기능 및 용도별로 분류하고, 관련 법령과 유사시설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 정립 방향을 마련함

다.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안전관리 기준 구성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시설 유형별 특성과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함
 - **(설치단계, 운영단계)** 점검 항목은 시설 설치 시 요구되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설치단계와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단계로 구분함
 -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 시설 유형은 로비, 복도, 승강기 등과 같이 공용공간에서의 기준과,
 - **(8개 부대시설별 구성)** 시설 특성에 따라 체육시설(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태권도 등,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체육교습실-축구 등, GX실·에어로빅·필라테스 등), 편의시설(체온관리실), 기타시설(문화강좌실 등)로 구분하여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을 구성함
 - **(공통 적용, 시설별 특성 적용 안전점검 항목)**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은 상기 8개 부대시설에서 동일한 '공통 적용' 항목과 차별적인 '시설별 특성 적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현장 활용성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구성함

- **(점검 분야)**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은 관련 법령, 지침 및 기존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체육시설법」, 「교육시설법」, 「학교보건법」, 「학교복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학교수영장 부대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
 -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학교 환경위생 관리 매뉴얼,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지침과 기존 교육시설 안전점검 기준을 참고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함
 - 다만, 본 연구에서의 항목들은 개별 항목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한 제시가 아닌 타 법령, 기준 등에서 기준을 종합 구성함에 따른 제한점을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전제함

라.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마련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장애인 편의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마련함

표 V-3 부대시설 설치단계 기준 항목 수

구분	합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항목 수(설치단계 기준)	34	17	2	6	4	2	3	0

- ▶ 건축 분야에서는 피난 및 대피 동선 확보, 공간 안전성, 미끄럼 및 충돌 위험 저감, 공간별 구조적 안전 확보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구성함
- ▶ 전기 분야에서는 물 사용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감전 및 누전 사고 예방, 전기설비 안전 확보, 침수 위험 대응 기준 등을 반영함
- ▶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설비 안전 확보, 누출 및 폭발 사고 예방, 설비 설치 위치 및 관리기준 등을 포함함
- ▶ 소방 분야에서는 화재 예방, 초기 대응 체계 확보, 피난 안전성 강화, 방재설비 관리기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함
- ▶ 위생 분야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특성과 수영장 연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결 유지, 감염 예방, 환기 및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함
- ▶ 장애인 편의 측면에서는 교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을 검토함

마.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은 설치기준 마련과 함께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체계가 필요함
- ▶ 이에 시설 유형별 주요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항목을 구성함
- ▶ 점검체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적 안전, 전기·가스·소방 안전, 위생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등 다각적 관점에서 구성함

표 V-4 부대시설 운영단계 기준 항목 수

구분	합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항목 수(운영단계 기준)	43	10	4	11	4	2	11	1

- ▶ 이를 통해 시설 운영주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점검 기반을 마련함
- ▶ 그리고, 공통항목과 함께 설치단계 기준과 운영단계 기준을 각 부대시설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를 제시함

표 V-5 부대시설별 안전점검 항목 수 구성

구분		합계	건축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안전위생	동선관리
항목 수 합계*	설치	34	17	2	6	4	2	3	-
	운영	43	10	4	11	4	2	11	1
	합계	77	27	6	17	8	4	14	1
공용부 항목	설치	7	1	1	1	-	2	2	-
	운영	19	2	4	4	3	1	5	1
	소계	26	3	5	4	3	3	7	1
공통적용 항목	설치	14	4	1	4	4	1	-	-
	운영	23	7	-	8	4	2	2	-
	소계	37	11	1	12	8	3	2	-
체력단련장 (헬스장)	설치	8	7	-	1	-	-	-	-
	운영	2	-	-	-	-	-	2	-
	소계	10	7	-	1	-	-	2	-
체육도장 (태권도 등)	설치	6	5	-	1	-	-	-	-
	운영	3	1	-	-	-	-	2	-
	소계	9	6	-	1	-	-	2	-
골프연습장	설치	8	7	-	1	-	-	-	-
	운영	-	-	-	-	-	-	-	-
	소계	8	7	-	1	-	-	-	-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설치	7	6	-	1	-	-	-	-
	운영	1	-	-	-	-	-	1	-
	소계	8	6	-	1	-	-	1	-
체육교습 (축구 등)	설치	7	6	-	1	-	-	-	-
	운영	2	-	-	-	-	-	2	-
	소계	9	6	-	1	-	-	2	-
GX실 (에어로빅 등)	설치	8	7	-	1	-	-	-	-
	운영	-	-	-	-	-	-	-	-
	소계	8	7	-	1	-	-	-	-
체온관리실	설치	4	2	-	1	-	-	1	-
	운영	2	-	-	-	-	-	2	-
	소계	6	2	-	1	-	-	3	-
문화강좌실 등	설치	5	4	-	1	-	-	-	-
	운영	-	-	-	-	-	-	-	-
	소계	5	4	-	1	-	-	-	-

(*): 부대시설별 항목의 각 설치단계, 운영단계에서의 중복 항목을 제외한 산정값

가. 학교시설 관리주체의 시설관리 의무 사항에 대한 병행 필요

- ▶▶ 상기 연구는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점검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 대상 시설은 교육시설의 부속시설 성격을 가짐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정기점검(소방점검, 가스점검 등), 안전관리(교육시설 안전점검 등) 등과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음
- ▶▶ 이에,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주체의 역할에 앞서 시설관리와 관련한 교육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에서의 운영·관리 등의 주의 의무는 교육시설에서의 진행과 병행될 것으로 살펴짐
- ▶▶ 다만, 부대시설의 성격상 개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의무사항과 상호 보완적인 병행이 필요함
 - 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의 수행과 병행하여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의 주의 의무를 안전점검 항목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 해당시설의 운영 단계에서 민간 사용허가를 통한 위탁운영 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운영·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최초 기 구축시설 이외의 추가(증축 등)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필요

- ▶▶ 기존 학교수영장과 관련 부대시설의 경우 초기 구축 이후 학교 관리주체의 잦은 정기적 변동과 민간 사용허가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실정임
- ▶▶ 일부 시설에서는 미승인 증축(또는 개보수 등) 등을 통한 시설의 변경이 살펴지는 등⁶⁵⁾ 안전성 확보 미비 사항이 예상됨에 따라,
- ▶▶ 안전점검 항목을 통한 운영·관리 보완에 앞서 실제 현장 구축시설에 대한 건축·구조 및 실내건축 측면 등에서의 안전성 확인과 대응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 본 연구에서의 안전점검 항목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역할은 법적·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기 시설의 당위성 확보 선행이 요구됨
- ▶▶ 다만, 학교시설복합화의 경우 교육시설임에도 체육시설이고 대민 공공시설이 되는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설계·시공·운영·관리 등의 전생애주기와 관련한 단계별 기준 미비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을 제언함

다. 공공에 개방되는 체육시설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필요

- ▶▶ 보수적인 관점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이면서, 공공에 개방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필 수 있음
- ▶▶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요구하는 편의시설의 확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과 관련한 제16조제1항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제2항에서의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별표 2]에서 제시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5) 서울교육청의 2024년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분야 특정감사'에서 도출된 '시설건축물 무단 설치 및 공유재산 관리 소홀' 등에서 살펴지는 사례 등(서울교육청 (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pp. 250~251)

- 다만, 학교시설과 함께 구성된 특성상 학교시설에서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일부 대응 가능하다고 살필 수 있으나,
-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동선 구분 및 접근 분리를 전제함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로 살피짐
- 이에, 공공 개방 체육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시설 노후화 보완 시 해당 기준의 병행 고려

- » 연구 대상범위가 되는 학교수영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평균 연식은 2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살피짐
- » 해당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단계별 시설 개선을 추진 중임에 따라, 시설 보완은 선행되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타 법령과 기준 등을 포함한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항목을 시설 보완 시 활용하여 개방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언함

마. 복합화시설(체육시설 등 포함)과 교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차별적 구체화 기준 필요

- » 기존 운영 학교 또는 신설 학교 구축 시 복합화시설의 구성은 교육시설 정책과 사회적 기초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 그러나,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등에서의 시설기준은 기존 교육시설 측면 접근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기 어려우며,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이외의 운영·관리 기준에서도 보완점이 필요한 것으로 살피짐
- » 이에, 복합시설의 구축 시 교육시설 이외의 체육시설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설치 및 운영·관리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공공 체육시설에서의 시설 설치기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유형 및 규모, 면적, 필요 시설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 체육시설 관점에서의 시설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교육시설과 복합화시설 관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기준을 차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살피짐
 - 관련 추가 연구를 통해 복합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치 및 안전점검 기준의 학교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고도화가 필요함

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 필요

- » 본 연구는 개별 항목들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해당 기준을 도출하지 않고, 타 법령 및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항목의 기준을 제시함에 따른 한계점을 가짐
- » 이에, 추후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의 검증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음
- » 복합시설의 활성화와 부대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추진에 앞서 관련 연구에 대한 추진은 필수적이라 살피지며,
- » 나아가, 선제적 설치·관리 기준 제시를 통해 관련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점검과 안전성 확보의 보완을 제언함

참고문헌

- 교육부(2026), 「학교보건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2026),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소방청(20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청(2026), 「도로교통법」
- 산업통상부(2026), 「산업표준화법」
- 산업통상부(20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20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2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2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20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청(20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청(20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교육청(202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교육시설관리본부(2026), 주요업무계획
- 교육시설관리본부(2025), 주요업무계획
- 교육시설관리본부(2024), 주요업무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2025),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202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045001)」 2025년도 사업 시행 공고
-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 교육부(202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20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20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202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백서
-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5),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부대시설 현황 조사 결과(알림용)
- 서울교육청(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교육부(2025), 「학교보건법」

- 교육부(202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교육부(20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25), 「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20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주시설공단(2025), 보도자료
(시민 안전, 함께 성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 전라일보(2025), 전주시설공단 '시 기반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수익창출 모델 기대
- 교육부(2024),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소방청(20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청(20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20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행정안전부(2024),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문화체육관광부(20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교육부(2023),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
- 교육부(202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교육부(2022),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소방청(202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방청(2022),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교육부(2021),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 교육부(202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의회(2016), 서울형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교육청(2011),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부록

설치 및 안전점검 기준 설명자료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관련 설치 및 안전점검 기준 설명자료

»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 관련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Checklist는

1. 공용부 안전점검 항목
2. 부대시설별 공통 적용 항목
3. 부대시설별 특성 적용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Checklist 세부 설명자료는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에 따라, 학교수영장의 부대시설 안전점검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참고용 자료의 성격만을 가지며, 실질적인 요구 기준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전제함

» 참고 법령 및 매뉴얼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2026), 「학교보건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2026),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소방청(20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청(2026), 「도로교통법」
- 산업통상부(2026), 「산업표준화법」
- 산업통상부(20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20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2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2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건복지부(20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청(20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청(20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교육청(202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2026~2024), 주요업무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2025),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202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45001)」
-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 교육부(202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20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20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202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교육청(2025),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교육부(2025), 「학교보건법」
- 교육부(202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교육부(20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2025), 「공중위생관리법」
- 보건복지부(20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교육부(2024),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소방청(20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청(20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20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행정안전부(2024),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문화체육관광부(20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교육부(202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 교육부(2022),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소방청(202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 소방청(2022),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교육부(2021),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 교육부(202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 고용노동부(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18),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의회(2016), 서울형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 서울교육청(2011),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매뉴얼

건축

탈의실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 설치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8. 2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응급통신시설(비상벨)의 상시 작동 및 관리자와 연동 여부 확인
(설치장소: 남녀화장실, 사각지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간)

-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 서울특별시의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서울형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2013. 3. 23.>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6) 커뮤니티 시설

- ①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커뮤니티 이용객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공간을 분리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배치한다.
- ② 커뮤니티 시설을 학교에서 수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부와 외부에서 연결되는 동선이 계획될 수 있는데, 내부 연결동선의 경우 학교방향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 ③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시설 사이에는 방범용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④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시설 사이에 학교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 ⑤ 커뮤니티 시설 주변에 비상벨/비상전화(응급통신시설)를 설치한다.
- ⑥ 커뮤니티 시설 주변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환경정비) 하고 기록카드에 정리한다.

7) 기타 교내 외부공간

- ①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사각지대는 주로 학교건물 후면이나 창이 없는 측면, 그리고 폐쇄형 담장과 인접한 공간과 건물배치에 의한 이격공간 등인데, 이러한 사각지대는 학교계획 단계에서 최소화시킨다.
- ② 배치계획으로 최소화가 곤란할 경우 주변을 감시하는 방범용 CCTV나 비상벨과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 ③ 방범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출입을 폐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거나 위험구역임을 공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④ 사각공간의 경우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청소가 잘 되지 않는 등 환경이 열악하여 일반학생들의 이용이나 접근이 기피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등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함으로써 사각지대를 관리한다.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불법촬영기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5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제5조(불법촬영 점검계획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
 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충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5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범죄 예방을 위해 승강기 내 CCTV를 설치, 승강기 내 비상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승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리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기계실 내부에 불필요한 장비 또는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5조(설비) ① 교육시설의 설비는 용도,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② 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나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계실, 공동구, 집수정 등 기계설비 관련 공간은 정비, 교체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치, 면적, 층고를 정하고, 장비 반입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것

〈사례1 - 기계실 관리상태〉



〈사례2 - 기계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1~2개월에 1회 이상 프리필터 청소를 실시, 연 2회 이상 미디움 이상의 필터 청소를 실시, 5년에 1회 이상 전문가에 의뢰하여 종합분해세척 및 실외기 청소를 실시 등 정기적 냉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제38조(설비 관리)** ① 냉난방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하면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교육시설이용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난방기구의 표면 온도는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냉난방설비는 설치된 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 ②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용 창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것
 2.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할 것
 3. 필터가 장착된 환기설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위생설비의 작동상황 및 상태를 점검 기록, 정화조 및 우수처리시설 청소하고 청소필증 및 관리카드를 보관, 수도 급수관에 대하여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 저수조 6개월에 1회 이상 저수조 또는 옥상물탱크를 청소, 지하수 음용수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생활용수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하고 결과서를 보관, 정수기,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또는 소독하고 결과 기록 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38조(설비 관리) ① 냉난방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하면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교육시설이용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난방기구의 표면 온도는 높지 않도록 관리할 것
3. 냉난방설비는 설치된 곳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②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환기용 창을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설비를 가동할 것
2. 환기설비를 통하여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할 것
3. 필터가 장착된 환기설비의 경우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것

③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급수설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
2. 지하수 등을 식수로 공급하는 설비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정기적인 소독, 수질 검사 등의 조치

(사례1 - 저수조 점검기록)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사례2 - 저수조 청소기록)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냉·온수기 관리카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정수기 관리카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케이블 등 관통부(전기실, 발전기실, EPS실 등), 방화셔터 셔터박스는 내화채움구조로 마감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가. 급수관·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사례6 - EPS실 방화구획 틈 메움〉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 ⑦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

출처: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펌프(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용 펌프)의 입출구에 설치된 밸브의 정상개방상태, 압력챔버에 설치된 압력계의 정상상태 지시, 동력제어반(MCC패널) 선택스위치의 '자동' 위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C) 소화펌프 유지관리 적정성 (1점)

심사 기준	배점
소화펌프 기동 상태 여부 확인	1

- 소화펌프 기동 상태 여부를 현장에서 ON/OFF 및 육안점검을 통해 확인
 - (압력계이지 등의 작동상태 및 ON/OFF상태 등을 체크

<p>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브가 개방되어 있으면(나사산이 돌출되어 있음) 양호 ○ 캡 부분에 열림(Open) 문자가 표시되면 양호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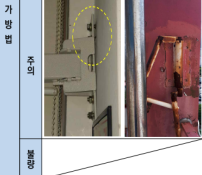
■ 항목 구성 및 근거 ■

» 피난기구의 사용방법 표시(표지 미부착, 인식불가 등)유무,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파손·변형 유무, 설치장소의 적정성 여부의 관리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피난·병화설비-완강기

평가항목	완강기 지지대의 견고한 고정 여부	코드	소형-22
평가항목	 <p>○ 완강기 지지대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양호</p> <p>○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완강기 위치를 표시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양호</p>		
	 <p>○ 완강기 지지대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았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주의</p> <p>○ 완강기 지지대가 상당한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면 주의</p> <p>○ 완강기 위치를 표시한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p>		

○ 완강기 지지대 구조

- 지지대는 부착 형태에 따라 천장부착형·(내·외)벽부착형·벽단부착형 등으로 구분함
- 지지대는 소벨대심돌과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정 부분의 부착 면부터 완강기 설치고리 중심까지의 길이는 40cm 이상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10m 이상으로 함
- 완강기 설치 부분의 회전 각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벽부착형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중형)

설치 기준	비고
피난기구의 설치 및 기능의 적정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 대피시 지상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노후, 파손(내부 관리상태 및 구멍) 등 없이 기둥·벽·바·보 기타 구조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경우 	
피난기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1

-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 상태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점
 - 간접 대피시 지상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노후, 파손 등 없이 기둥·벽·바·보 기타 구조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경우
- 피난설비(완강기 등)의 내부 관리상태 및 구멍이 양호한 경우
- 피난기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 1점
- 모든 피난기구 현수조시 안전, 피난기구를 충분히 확인하여 설치 before 선정
- 설치 before 확인 시 기둥의 직경 및 안내표시의 적정성 설치 before 변경
- 피난기구의 화재관련 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before 대상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심사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기둥의 각 부분으로 직경 폭도로 판단할 수 있는 확인(안전성) 용도로 사용(적용) 중에 한때

기준	합수	비고
피난기구의 설치 및 관리상태가 모두 만족함	100%	2점
	75~100% 미만	1.5점
	50~75% 미만	1점
	25~50% 미만	0.5점
	25% 미만	0점
피난기구 위치 확인용 안내표시 부속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해당없음	-	




● 용어설명

- 1) 피난기구: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 위한 기구로서 미끄럼틀·피난고·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잠대·승강식피난기 등을 말한다.
- 2)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 간이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4) 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위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올수 있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간적 특성 및 재질사 특성에 따라 경사구조대 또는 수직구조대를 설치한다.

● 세부내용

- 점검사항으로는 피난기구(완강기) 사용방법 표시, 피난기구 등의 관리상태 및 설치장소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으며, 아래 사진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에 대한 내용 및 설치예시를 나타내주고 있다.

● 피난기구의 종류 및 적용성

구분	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
개념	사용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조속기가 자동으로 조정하여 왕하할 수 있는 기구	피난시에 저장까지 모든 내부로 왕하하는 피난기구	건물에 고정시켜 피난용으로 사용하는 금속 제사다리
예시	 출처: 한국일보	 출처: 서한메르센시	 출처: 네이비블로그

피난기구의 종류 및 적용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1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2.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3.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 피난·방화설비-대피통로

평가항목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	코드	소방-31
장애물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으면 양호 ○ 비상구 주변 비상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치물이 없으면 양호	
주의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주의 (사진 상) ○ 장애물 또는 물건의 적치로 비상구가 열리지 않거나 피난 시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상태이면 주의 (사진 하) ○ 비상구 앞 입장권 발매기 등의 기기를 설치하여 비상 출입문 입구를 막은 경우도 주의 (사진 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비밀			

사 피난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2점)

심사 기준	배점
피난계획에 따라 피난안내도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

- 제출된 피난안내시설(피난구/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유도선 등) 및 피난기구 설치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 확인
- 피난안내도를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장소(예, 홀, 로비 등)에 부착 및 게시하여 파손, 떨어짐 없이 관리하고 피난 정보(통신 안내, 피난기구 위치, 현위치 등)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경우 1점
- 모든 피난안내도 전수조사 진행, 피난안내도는 층마다 부착하였는지 확인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점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여부를 확인
- 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여부를 확인
-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정밀과 동시에 음성출력 기능이 포함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2018.08.09. 이후 허가신청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모든 피난안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설치위치,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시공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 여부 확인

- 상동

▶▶ 콘센트, 스위치의 접속상태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성 (3점)

심사 기준	배점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욕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 제출된 전기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 1)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 50V 초과 기기 전로에 누전차단기 설치한 경우 1점
 - * 금속제 외함을 분전반을 지칭하지 않고 실제 전기기기,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내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장심사 시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설치 위치, 선로 등을 확인하여 각 전기기기, 기구 등의 금속제 외함의 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점수 인정 가능함
 - 2) 물 사용 공간에 설치한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한 경우 및 누전차단기가 분전반에 설치된 경우 모두 인정하며, 누전차단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표기 필요)
 - * 물 사용 공간 내 별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에 의거하여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분전반 내 물 사용 공간의 선로에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3) 욕외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 물 사용 공간이 없거나, 욕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심사
- 모든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전조사를 진행하며, 각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설치된 장소의 개소 비율을 포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전기·전자분야)

- ① 전기·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된다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가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실험·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조 (지력에 대한 보호)

- 전로에는 지력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력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 (지력차단장치 등의 시설)

- 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1조 (욕속 또는 욕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 ④ 욕속 및 욕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 (욕속 또는 욕외의 방전등 공사)

- ④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각 분기 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상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장력에 적합한 강도도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EPS / TPS실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분전반 내에 분진 없이 관리, 분전반 외함에 분전반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물 적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52조(전기·전자분야) ① 전기·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가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실험·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례1 - 누전차단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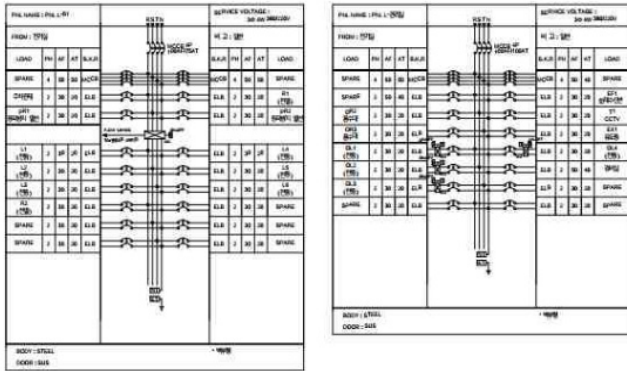


〈사례2 - 물 사용 정격감도전류 15mA 사용〉



(출처 : <https://blog.naver.com/klpa2012/222382444221>)

〈사례3 - 분전반 결선도〉



● 세부내용

- 분전반 전면 부착물 부착은 금지하여야 하며 적재물은 이동 조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조작과 평상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토록 관리되어야 한다.
-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분전반 앞에 적치물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 점검 및 재해 발생시 즉시 개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분전반 앞 적치물 방치(부적합)〉

〈분전반 앞 적치물 방치(부적합)〉

- 분전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분전반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배·분전반의 유해·위험 요인
 - ① 빛물 등이 유입되거나 내부에 쌓인 이물질 등에 의한 누전 위험
 - ② 내부 충전부에 절연단개 미설치로 충전부 노출 위험
 - ③ 시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 외 근로자의 임의 전원 연결로 인한 감전 위험
 - ④ 절연 및 접지 상태 불량으로 인한 배전반 누전 위험



〈배전반 내 먼지, 부식〉

〈배전반 먼지, 누수로 인한 화재〉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행정(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
 - 산업통상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료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개방형 연소기 또는 강제(급)배기식 연소기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목욕탕이나 환기불량 장소에 보일러나 온수기가 설치되지 않고(밀폐식의 경우 제외), 배기통은 내식성 재질로 배기에 방해가 없고,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봉대 제외)으로 마감조치 할 것
 -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곳은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통이 정상 체결되어 있으며, 배기통 끝에 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연소기 (공통)	○ 보일러, 온수기설치(시공표지판 포함)와 배기통재료는 적정한가? - 목욕탕이나 환기불량 장소에 보일러나 온수기가 설치되지 않고(밀폐식의 경우 제외), 배기통은 내식성 재질로 배기에 방해가 없고,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봉대 제외)으로 마감조치 할 것
	○ 개방형 연소기 설치는 적정한가? - 개방형 연소기가 설치된 곳은 환풍기나 환구를 설치할 것
	○ 강제(급)배기식 연소기 설치상태가 적정한가? -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배기통이 정상 체결되어 있으며, 배기통 끝에 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 항목 구성 및 근거 ■

▶▶ LPG 용기의 옥외보관, 차양막 설치, 전도방지, 보호 덮개 등의 가스 기구의 적절한 관리상태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가스레인지 및 가스 전열기 등 이와 유사한 것
-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제4조(기연성가스 경보기) ① 기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연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0미터 이상 1.50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0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0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0미터 이하로 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
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0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0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5. 단독형 경보기는 천정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0미터 이하로 한다.
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출처: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제4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적정 필터를 사용한 공기순환기를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순환 가능하도록 계획 및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2021),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개정)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 공기조화(정화)설비 설치 적정성 (2점)

심사 기준	백점
「학교보건법」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경우 (에어컨 내에 공기청정기능을 삽입한 경우에도 인정)	1
MERV 12-15등급 필터를 사용한 공기순환기를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순환 가능하도록 계획 및 설치한 경우	1

- 각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식당 등)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1점
- 각 교실 내 설치된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1점 (공기청정기 삽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모든 교실 전수조사 진행,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각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식당 등)에 설치된 공기순환기에 MERV 12-15등급의 필터를 설치한 경우 1점
- MERV 12-15등급 필터를 사용하도록 계획한 때도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1점
- *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배포되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안)에 따라 MERV 12-15등급 필터 대신에 ~2020년 9월(MERV 12-15), 2020년 9월~2021년 4월(입자포집률 95%), 2021년 5월 이후(KS B 6879) 등의 필터를 사용하여 관련 근거를 확인할 경우 백점 가능함 (필터 범위 확대하여 심사 반영)
- 모든 교실 전수조사 진행, 해당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실의 수 대비 되어있는 실의 수를 비율로 반영 (해당 실 심사 시 한 개라도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해당 실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기준	점수	비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또는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을 삽입하여 사용함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교실 내 공기순환기에 MERV 12-15등급 필터 설치 또는 MERV 12-15등급 필터 사용하도록 계획한 서류 확인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나.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점검사항

1. 환기설비

- ① 기계환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교실 내 설치된 기계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 필요
- ② 내/외부 급배기구 주변에 오염원은 없습니까?
* 주차장, 공사, 도로 등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및 가능성 확인
- ③ 기계환기설비 급배기구 주변의 장애물은 배제되어 있습니까?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실내공기의 순환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제
- ④ 기계환기설비의 내부 및 외부의 상태는 깨끗합니까?(청소일자 :)
*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 유지, 곰팡이 흔적(청소일시)
- ⑤ 기계환기설비의 소음이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 소음이 과도할 경우 팬, 급배기구 및 필터의 손상여부 확인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 ⑥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은 적정합니까?
* ~20.9μm(MERV 12-15), 20.9~21.4μm(입자포집률 95%), 21.5μm(KS B 6879)
*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확인
- ⑦ 주요부품(송풍기, 열교환소자 등)의 성능 및 내구성 저하 등에 대한 점검 시기를 확인하였습니까?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 항목 구성 및 근거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1조, 9, 16>
 먹는 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만세균은 20CFU/mL, 중온일만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할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만세균은 100CFU/mL, 중온일만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배합 또는 배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 한 적용한다)
 마. 아질산염환원형질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 한 적용한다)
 바. 역시리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공시설의 물의 경우에 한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mg/L(샘물·열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mg/L(열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붓산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

열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픈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렙토콜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하. 유라늄은 30mg/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열지하수 및 먹는물공공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케냐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틸렌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에틸렌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디. 1,4-다이옥신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물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공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브로모디할로메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할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디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로아세트산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트산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트산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하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열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공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세탁용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열지하수·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공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중발견유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열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세알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중발견유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질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 등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공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열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열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이용질서 유지 여부가 관리,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용 안전점검표」
- ▶▶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정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응 및 대비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 안전·위생 매뉴얼 작성 및 게시, 안전수칙이 게시 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 대여용 장비의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 이용자 안전장구 착용지도 및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 온도계와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4. 23.>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직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파.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등 안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성 (3점)

심사 기준	배점	점수
금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합계		



(용어정리)
 ○ 누전차단기 : 전기기계기구가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3) 옥외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 물 사용 공간이 없거나,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심사
- 모든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각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설치된 장소의 개소 비율을 뜻함)

옥외의 전기간판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해당없음	-	

○ 건물 내·외부-부착물

평가항목	광고간판, 조명, 안내 사인물, 광고탑 등의 파손 여부	코드	시설-16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부 등이 단단히 고정되었거나 마감이 잘 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없는 상태이면 양호 ○ 연결부 등이 녹과 부식이 발생하는 등 일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면 양호 		
비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학교 교육활동 침해 및 학생 안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교육청(2025),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6), 2026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운영 중 안전대책 수립

- 학교복합시설 운영 중 안전 확보 및 보안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동선 분리, 차량과 보행자 출입구 분리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운영중 안전대책 관련 예시 >

- 외부인 동선과 학생 동선 분리하여 교내 외부인 진입 방지
- 교과시간 학교복합시설 사용은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동하여 동선 교차 최소화
- 외부인 진입 및 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 및 운영
- 학습권 보호를 위해 소음 및 안전이 우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자제 요망
- 시설별 운영인력이 상주 근무하여 위험상황에 대비
- 시설 담당자를 포함한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및 교육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연 1회 수강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완료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6), 2026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건축

출입문 안전관리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손끼임 방지를 위한 고무패드, 속도조절장치, 자동문 등 설치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 여닫이문 회전반경 안전에 대한 후퇴 시인성 표시 및 시창(반투명 필름)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 ▶ (유리재로 출입문) 강화유리 사용 또는 파괴시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필름 부착 등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2. 현관 출입문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유리문인 경우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 등의 재질로 할 것
3.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의 교실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 교실문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교실문에는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교실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 라. 교실문의 일정한 높이에는 반대편이 보이는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피난경로에 위치한 교실문은 피난 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바. 여닫이 형태의 교실문에는 도어클로저 등을 설치하여 여유 있게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문 등 재질에 따라 이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육시설의 바닥과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과 복도는 단차나 돌기가 없도록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기는 위치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교육시설이용자가 단차나 돌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환기구나 시스템박스 등이 설치되는 교실 바닥의 높이는 주변 바닥의 높이와 같게 할 것
 - ④ 교육시설의 창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입구 및 교실의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창문틀의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얇아야 한다.
 - 나. 창문의 유리는 강화유리, 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파손될 수 있는 얇은 유리의 경우 파편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위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균열, 누수, 침수, 백태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상동
- ▶▶ 철골재 접합부의 볼트 누락, 철골재 부식, 도장탈락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상동
- ▶▶ 철골재(보, 바닥 등)의 휨, 처짐, 변형 등의 손상 발생 여부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주요점검항목	상태	판단기준
철근부식 및 노출 콘크리트 박리, 박락 등의 발생	적합	- 철근부식이 없거나 약간의 점녹 발생 - 박리, 박락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
	적합 (관리필요)	- 면녹 발생, 부분적 들뜬 녹 발생 - 박리 깊이 0.5~1.0mm, 박락 깊이가 25mm 이하인 경우
	부적합	- 들뜬 녹의 광범위 발생 또는 두꺼운 층상의 녹 발생 - 단면결손이 발생한 상태 - 박리 깊이 1.0mm 이상, 박락 깊이가 25mm 이상인 경우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천장 및 벽면에 설치되는 장비들의 흔들림, 탈락 등 고정상태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 확인 (디지털장비(전동 스크린, 전동 블라인드, 빔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 및 선풍기, 냉·난방기, 스피커, 게시판 등)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
 -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6장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 마감재의 파손(균열, 탈락), 오염, 누수 및 침수 흔적의 발생 여부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2장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제5조(구조안전 원칙) ① 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유효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구조부재에 사용되는 모재 및 마감재는 부식, 마모,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부재와 비구조요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유리창 및 방충망의 설치, 유리의 깨짐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출입구 및 교실의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창문틀의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얇아야 한다.
 - 나. 창문의 유리는 강화유리, 망유리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파손될 수 있는 얇은 유리의 경우 파편 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리에 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창문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창문은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창문의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8조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9. 17.>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 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출처: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 기재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 소화기 적정 설치 및 위치표지 부착, 보행거리 20m 이내 또는 바닥면적 33㎡ 이상 구획된 거실에 비치 여부 확인
 - 상동
- ▶▶ 공간별 특성에 적합한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출처: 소방청,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피난안내도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피난기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적절하게 부착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피난안내도 현위치 표기)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4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14조(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교육시설의 장은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자동방화셔터의 작동기능 점검을 가급적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실시하고,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방화셔터 바닥에 스티커 등 안내표시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사례4 -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설치〉



〈사례5 - 바닥에 방화셔터 내려오는 곳 표시〉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지시압력의 정상범위, 안전핀 체결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주변 적치물 유무, 표시등, 호스 등 관리 상태 등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구 유지관리 적정성 (2점)

심사 기준	배점	점수
옥내소화전설비 안전관리 적정성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경우		
▶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주변 적치물 유무, 표시등, 호스 등 관리 상태)		
연결송수구 주변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관리 하고 있는 경우	1	
합계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헤드의 파손 및 탈락이 없고, 헤드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여부 및 작동 준비상태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평가 방법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의 파손 및 탈락이 없으면 양호 ○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에 장애물이 없으면 양호 ○ 노즐 입구에 막힘이 없고 부식이 없으면 양호 ○ 헤드가 벽면으로부터 1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있으면 양호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드가 파손된 상태이면 주의 (사진 상) ○ 헤드 주변에 조명기구 등과 같은 장애물이 설치되어있으면 주의 (사진 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탈락, 파손, 변형 등이 없는 및 상시 점등,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유무 등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1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5 한다.

○ 피난·방화설비-유도등

A) 피난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2점)

평가항목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코드	소방-25
평가방법	 <p>○ 유도등 주변에 유도등의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으면 양호</p>		
	 <p>○ 유도등 주변에 유도등의 식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있으면 주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p>		
요령			

심사 기준	배점
피난계획에 따라 피난안내도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

- 제출된 피난안내시설(피난구/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유도선 등) 및 피난기구 설치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 확인
- 피난안내도를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장소(복도, 홀, 로비 등)에 부착 및 게시하여 파손, 떨어짐 없이 관리하고 피난 정보(통신 안내, 피난기구 위치, 현위치 등)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경우 1점
- 모든 피난안내도 전수조사 진행. 피난안내도는 층마다 부착하였는지 확인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점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여부를 확인
- 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여부를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정밀과 동시에 음성출력 기능이 포함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여부를 확인(단, 2018.08.09. 이후 허가신청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모든 피난안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설치위치,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기준	점수	비고
각 층마다 피난안내도 부착함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유도등 설치 위치 및 관리상태 양호	100%	1점
	75~100% 미만	0.75점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 피난구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 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 시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표시면이 쉽게 식별되어야 함
- 상용전원이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전원을 말하고,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 단전 시 사용하는 배터리(유도등 내부에 장착)에 의한 전원을 말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탈거 시 자동 점등되고,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피난·방화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

평가항목	탈거 시 자동 점등상태 여부	코드	소방-26
평가 방법		○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거치대에서 당겨서 탈거할 경우 자동으로 밝게 점등되는 경우 양호	
		○ 기기가 망가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완전히 탈거하여도 점등하지 않거나 충분히 밝지 못한 경우 주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평가항목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장소

-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함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
-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구성품〉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화재시에 즉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피난에 장애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13조(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 ①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을 설치할 것
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더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더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피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내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피난층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각각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피난·방화설비-비상구

○ 피난·방화설비-대피통로

평가항목	화재 시에 즉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 여부	코드	소방-27	평가항목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	코드	소방-31
평가 방법	 <p>비상문 자동개폐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시간장치 없이 비상시 즉시 개방될 수 있는 상태이면 양호 ○ 비상시 즉시 개방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이면 양호 ○ 문이 열리는 방향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으면 양호 ○ 비상구 주변 비상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치물이 없으면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시간장치가 있거나 문 고임(노루발 부착) 등에 의하여 즉시 개방될 수 없는 상태이면 주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주의 (사진 상) ○ 장애물 또는 물건의 적치로 비상구가 열리지 않거나 피난 시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상태이면 주의 (사진 하) ○ 비상구 앞 임장권 발매기 등의 기기를 설치하여 비상 출입문 입구를 막은 경우도 주의 (사진 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방해되는 물건이 없도록 관리, 셔터, 레일 등 외관의 정상상태 및 장애물 적치 여부, 방화셔터 연동제어기의 정상 대기 상태 유지 여부, 옥상출입 자동개폐장치(위급시 수동개폐 가능), 적재물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3조 내지 제14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13조(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 ①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을 설치할 것
 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장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 ② 피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내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피난층으로부터 건물의 바깥쪽으로 이르는 통로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경사로를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보행거리가 각각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제14조(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승마대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자동방화셔터의 작동기능 점검을 기급적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실시하고,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방화문 설치 및 관리상태 현황

항목	심사 기준	백분
방화문의 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방화문 항상 닫힌 상태에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방화문의 비상식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장폐쇄, 도어스트로프 미설치 등) 	2
방화문 설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피난용 방화문에 위급 시 수동으로 즉시 개방 가능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의 위치가 적절함 경우 	1

- 제출된 방화설비 및 방화문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하여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여부 확인
- 방화문의 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점
- 고품질방화문 항상 닫힌 상태에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관리하는 경우
- 방화문의 비상식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장폐쇄, 도어스트로프 미설치 등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
- 방화문이 설치상태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점
- 옥상 피난용 방화문에 위급 시 수동으로 즉시 개방 가능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경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문의 위치가 적절함 경우
- 모든 방화문 전수조사 **인원 시**, 현재로서 방화문의 **개폐 또는 제어인식** 작동여부 및 적절함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비준 또는 불합
- 비준은 전체 층수 대비 방화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층의 비율로 적용
- 방화문이 없는 경우와 개고 당시 방화문의 **폐쇄 상태** 아닌 이유로 방화문이 없는 경우 '제외'로 함으로 심사
- 옥상 방화문이 피난용이 아닌 기계전기실 **인원인 경우** '제외'로 함으로 심사



기준	합수	백분
방화문의 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가 모두 만족함	100%	2점
• 고품질방화문 항상 닫히거나 자동으로 닫힘	75-100% 미만	1.5점
• 장폐쇄 미적치, 도어스트로프 미설치 등 적절하게 관리함	50-75% 미만	1점
	25-50% 미만	0.5점
	25% 미만	0점
	해당없음	-
방화문의 설치상태가 모두 만족함	100%	1점
• 옥상 피난용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75-100% 미만	0.75점
• 피난에 지장 없도록 위치 적절함	50-75% 미만	0.5점
	25-50% 미만	0.25점
	25% 미만	0점
	해당없음	-

나 방화셔터(또는 방화스크린) 설치 및 관리상태 현황

항목	심사 기준	백분
방화셔터의 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방화셔터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 바닥에 적재물 없이 관리하는 경우 • 스틱바 등 안내시설을 부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2
방화셔터 설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셔터(또는 방화스크린)는 연기감지기에 의해 발동하며, 열감지기에 의해 완전폐쇄가 되는 구조인 경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셔터의 위치가 적절함 경우 	1

- 방화셔터의 작동 및 안전관리 상태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점 부여
- 화재 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 바닥에 적재물 없이 관리하는 경우
- 스틱바 등 안내시설을 부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 방화셔터의 설치상태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점 부여
- 방화셔터 또는 방화스크린은 연기감지기에 의해 발동하며, 열감지기에 의해 완전폐쇄가 되는 구조인 경우
-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방화셔터의 위치가 적절함 경우
- 모든 방화셔터 전수조사 진행, 현재로서 방화셔터를 **개폐하거나 제어인식** 작동여부 및 적절함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비준 또는 불합
- 비준은 전체 층수 대비 방화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층의 비율로 적용
- 방화셔터가 없는 경우 '제외'로 함으로 심사

다 피난·방화설비-방화문 및 방화셔터

평가항목	셔터, 레일 등 외관의 정상상태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코드	소항-29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셔터 또는 레일의 외관상 파손상태가 없으면 양호 ○ 방화셔터 하부 장애물 등이 있으면 양호 ○ 일체형 방화셔터의 경우 셔터 비상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있으면 양호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5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1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규모 및 용도를 고려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2.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3.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 피난·방화설비-대피통로

평가항목	비상구, 피난통로, 복도, 계단에 장애물 설치 여부	코드	소방-31
장애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으면 양호 ○ 비상구 주변 비상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적치물이 없으면 양호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계단에 장애물 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면 주의 (사진 상) ○ 장애물 또는 물건의 적지로 비상구가 열리지 않거나 피난 시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상태이면 주의 (사진 하) ○ 비상구 앞 입장권 발매기 등의 기기를 설치하여 비상 출입문 입구를 막은 경우도 주의 (사진 하) <p>(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p>
비고			

사 피난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2점)

심사 기준	배점
피난계획에 따라 피난안내도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 경우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

- 제출된 피난안내시설(피난구/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유도선 등) 및 피난기구 설치 관련 도서 등을 검토하여 설치 위치 확인
- 피난안내도를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장소(예, 홀, 로비 등)에 부착 및 게시하여 파손, 떨어짐 없이 관리하고 피난 정보(통신 안내, 피난기구 위치, 현위치 등)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경우 1점
- 모든 피난안내도 전수조사 진행, 피난안내도는 층마다 부착하였는지 확인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의 설치위치, 관리상태 등이 적절한 경우 1점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여부를 확인
- 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여부를 확인
- 「장애인·노인·임상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정밀과 동시에 음성출력 기능이 포함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2018.08.09. 이후 허가신청 등의 행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모든 피난안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설치위치, 관리상태가 양호한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
- 비율은 전체 층수 대비 설치된 층의 비율로 적용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물사용공간의 누전차단기(15mA)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전기설비-감전예방

평가항목	욕실용 누전차단기(15mA)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코드	소방-35
평가 방법	 15mA		○ 분전반 내 욕실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 용량이 15mA이하이면 양호 ○ (권고사항) 분전반 각 사용처에 대한 Address 표기되어 있으면 양호
	 30mA		○ 분전반 내 욕실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용량이 15mA 이상이면 주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즉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불량량			

- 정격감도전류란 누전차단기가 누전을 감지하는 전류를 말함. 일반적으로 감도전류가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데 반해, 수영장,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 회로 정격 감도전류 15mA 이하(동작전류 시간 0.03초 이하)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15mA 이하의 누전은 누전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누전이라 인지하고 차단기가 동작함. 이러한 누전차단기(15mA, 0.03sec)의 주목적은 감전을 예방하는 데 있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설치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일반 부대시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업무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물 사용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멀티형 콘센트 등 다중(문어발식)으로 사용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접지극 부착형 콘센트를 사용 여부 확인

- 상동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콘센트 설치 적정성 (2점)

심사 기준	배점	점수
공간 특성에 적합한 콘센트를 설치한 경우	2	
• 일반교실, 특수학급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과학실, 기술실 : (바닥형)덮개 있는 매립형, (천정형)상·하 이동식 전동형, (일반형)직업대로부터 30cm 높이		
• 교우실, 행정실 : 일반형, 안전형 콘센트		
• 조리실 : 누전차단기 부착형		
• 물 사용실 : 방수형, 덮개형, 방적형		
합계		

B) 콘센트 유지관리 적정성 (1점)

심사 기준	배점	점수
멀티형 콘센트 등 다중(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해당 콘센트 및 멀티 콘센트에 누전차단기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 인정)	1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용어설명

- 1) 정격전압: 전기사용기계기구·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 2) 팬던트스위치: 코드의 중간에 부착하는 누름스위치를 말한다.
- 3) 조영물: 건축물, 광고탑 등 도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말한다.

● 콘센트 설치방법의 적정성 판단 기준

주요점검항목	상태	판단기준
• 콘센트 정격전압 및 사용전압 • 옥실 등 물기가 있는 곳의 방적형 콘센트 설치 여부	적합	- 사용전압 이상의 정격전압을 가진 콘센트 설치 - 용량 3.0kw이상의 기계·기구에는 별도의 전용회로를 구성하여 사용 - 옥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 사용
	적합 (관리필요)	- 콘센트 피손 등 유지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경미한 위험이 있는 상태
	부적합	- 사용전압 미만의 정격전압을 가진 콘센트 설치 - 용량 3.0kw이상의 기계·기구를 위한 별도의 전용회로 미설치 - 옥실 등 물기가 있는 곳에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
-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통치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면발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방수형 콘센트)



(누전차단기부착형 콘센트)

○ 전기설비-취재예망

평가항목	점검배선 등의 외관상태(노출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 여부	코드	소방-34
점검		○ 콘센트 전선의 절연피복이 온전한 상태 이면 양호 ○ 콘센트 정격전류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 양호 - 콘센트 뒷면에 정격전류가 표기되어 있음 ○ 장수기 등 누전 우려가 있는 곳의 콘센트가 배면에 부착되어있으면 양호	
평가 방법		○ 배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주의 (사진 상) ○ 문어발식으로 사용을 하면 주의 (사진 하) (주의 등급단계의 판정을 한 후, '특히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함)	
비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체육시설 내의 조도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4]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교육부(2021),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 00-공통사항

평가항목	한국산업규격 KS 조도 기준 KS A 3011 (무도학업 및 무도장업은 제외)	코드	체육 00-01
평가방법			
	기준		
	양호	○ 각 시설 조도기준을 준수한 상태이면 양호	
	주의	○ 각 시설 조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이면 주의	
불량			



조도기

※ 측정점을 경하는 방법

- 조도는 주로 시(視) 작업 면(특별히 작업 면의 지정하지 않을 때는 바닥 위 85cm, 앉아서 하는 활동하는 경우에는 바닥 위 40cm, 복도·욕의 등은 바닥 면 또는 지면에 있어서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수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음
- 또 이 조도는 설비 당초의 값은 아니고, 항상 유지하여야만 하는 값을 나타냄
- 국부 조명을 사용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는 경우, 전체 조명의 조도는 국부 조명에 의한 조도의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접한 방, 방과 복도 사이의 조도 차가 현저하지 않도록 함

라. 정기점검

검사사항	검사방법	검사횟수	판정기준	검사기관
조도 (인공조명)	천장 및 교실의 조도를 각각 9곳 이상을 측정한다.	연1회 이상	300룩스 이상	학 교
눈부심	보는 것을 방해하는 광원, 광택의 유무를 조사한다.	연1회 이상	눈부심이 없을 것	학 교

마. 측정절차

1) 조도

- 조도 측정은 수업시간 대에 조명 기구를 켜고 검사한다.
- 교실 중 대표 할 수 있는 3개 교실(일반교실2, 특별실1)을 선정한다.
- 조도계는 광전지 조도계를 사용하나 근래에는 디지털조도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으므로 디지털조도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장기간 사용 시 조도계의 감도차가 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사용기에 맞는 보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광전지 조도계의 규격(KSC 1601)에 적합한 조도계 또는 동등이상의 조도계 사용
- 조도 측정 시 커튼 또는 블라인드 등으로 가리고 측정한다(단, 직사광선이 비칠 때 결과값에 큰 영향을 주므로 커튼 및 블라인드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기록해 둔다).
- 교실 및 교실 이외의 측정위치는 바닥 위 75cm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업의 실태에 맞추어 그 이상의 높이에서 측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2025),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EPS / TPS실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 분전반 내에 분진 없이 관리, 분전반 외함에 분전반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물 적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2023), 교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서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제52조(전기·전자분야) ① 전기·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더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기 미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실험·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위한 단락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사례1 - 누전차단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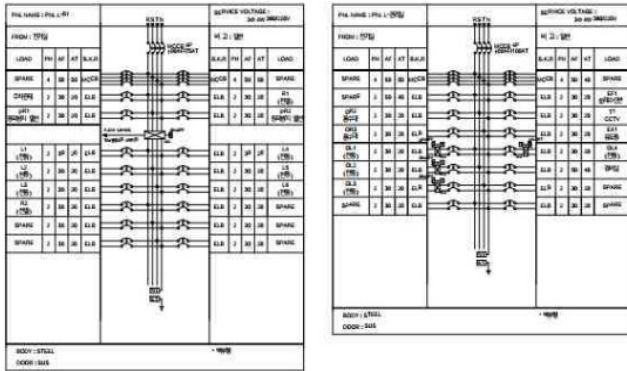


〈사례2 - 물 사용 정격경도전류 15mA 사용〉



(출처 : <https://blog.naver.com/klpa2012/222382444221>)

〈사례3 - 분전반 결선도〉



● 세부내용

- 분전반 전면 부착물 부착은 금지하여야 하며 적재물은 이동 조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조작과 평상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토록 관리되어야 한다.
-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분전반 또는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분전반 앞에 적치물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 점검 및 재해 발생시 즉시 개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분전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분전반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배·분전반의 유해·위험 요인
 - ① 빛물 등이 유입되거나 내부에 쌓인 이물질 등에 의한 누전 위험
 - ② 내부 충전부에 절연덮개 미설치로 충전부 노출 위험
 - ③ 시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 외 근로자의 임의 전원 연결로 인한 감전 위험
 - ④ 절연 및 접지 상태 불량으로 인한 배전반 누전 위험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항목 구성 및 근거 ■

- ▶▶ 전기기계기구(냉장고, 에어컨, 전동기 등) 접지시공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안전인증 전문기관(202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 심사매뉴얼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 ▶▶ 적절한 누전차단기에 연결 여부 확인
 - 상동
- ▶▶ 콘센트, 스위치의 접속상태 등 외관과 고정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상동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A)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성 (3점)

심사 기준	배점
급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물 사용 공간(욕실, 화장실 등)의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욕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

- 제출된 전기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 1) 급속제 외함을 가지며 사용전압 50V 초과 기기 전로에 누전차단기 설치한 경우 1점
 - * 급속제 외함은 분전반을 지칭하지 않고 실제 전기기기, 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내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장심사 시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설치 위치, 선로 등을 확인하여 각 전기기기, 기구 등의 급속제 외함의 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점수 인정 가능함
 - 2) 물 사용 공간에 설치한 콘센트 회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한 경우 및 누전차단기가 분전반에 설치된 경우 모두 인정하며, 누전차단기의 설치 위치에 대한 표기 필요)
 - * 물 사용 공간 내 별도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없는 경우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에 의거하여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분전반 내 물 사용 공간의 선로에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3) 욕외 전기간판, 방전등, 콘센트 등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1점
 - 물 사용 공간이 없거나, 욕외에 시설하는 전기간판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심사
 - 모든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전조사를 진행하며, 각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비율 범위의 점수 반영(설치된 장소의 개소 비율을 뜻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전기·전자분야)

- ① 전기·전자 설비는 내부까지 고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된다라도 설비의 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② 모든 분기회로에는 전로의 단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단락 보호용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과전류보호장치나 이를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③ 실험·실습실 내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접근 및 개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는 고전압 실험·실습 장비를 위한 단독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 ⑤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조 (지력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력이 생겼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지력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 (지력차단장치 등의 시설)

① 급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1조 (욕속 또는 욕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④ 욕속 및 욕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25조 (욕속 또는 욕외의 방전등 공사)

④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력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각 분기 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장력에 적합한 강도도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2조

■ 항목 구성 및 근거 ■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행정(관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교육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50조
- 산업통상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 현행 설치기준 관련 참조사항 ■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콧·상자콧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콧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